



노스캐롤라이나주
평가위원회

의제: 고위당국결정번호

수신:

원고

고용주

사례진술 :

원고는실업보험혜택에대한새로운클레임 (NIC)을유효하게제출했습니다 .그후,고용안전부(“Division”)는원고에게지불할주 간혜택이\$임을결정하고, 원고가설정한수혜기간동안원고에게지불할수있는실업보험혜택의최대금액은\$ 임을결정하였습니다.

이클레임은마지막취업에서의퇴직문제에대한판결자에게회부되었습니다.판결자는원고가혜택을받기에(실격이라는) (실격이아니라는) (자격이있다는) (자격이없다는)서류번호의판결자결정을내렸습니다. (원고) (고용주)는이결정에대한항소를제기하였으며,이문제는항소번호에따라항소심판(이름)에게제출되었습니다.다음과같은개인들이청문회에서항소심판앞에출석하였습니다: 일,항소심판은 N.C. Gen. Stat. § 96()에따라원고가실업보험혜택을받기에(실격이라는) (실격이아니라는) (자격이있다는) (자격이없다는)결정을내렸습니다.(원고) (고용주)가항소하였습니다.

발견한사실 :

1. 원고는부터까지의기간동안지속적인클레임을제기하였습니다.원고는본부와함께 일신청을했으며,본부에서요청한대로취업사무실에보고를계속하고,N.C. Gen. Stat.§ 96-15(a)에따라혜택클레임을신청하였습니다.
2. 원고는부터고용주를위해로서일하기시작했습니다. (그) (그녀)는일고용주를위해마지막으로일하였습니다.



법의규정: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고용안전법은 혜택연도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이 실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혜택연도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실업 상태가 된다:

- (1) **급여명세서에 포함됨.**
 개인은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이 혜택연도 설립 요청을 한 급여 주 동안 일이 부족했던 이유로 해당 개인이 정규직으로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 공장, 또는 산업에서 개인은 통상적으로 예정된 풀타임 3 일과 동일한 양보다 적게 일하였다.
- (2)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음.**
 개인은 실업 혜택을 위한 클레임을 제기한 날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N.C. Gen.Stat. §96-15.01(a).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고용안전법은 설립된 혜택연도 내에 혜택주간 동안 원고가 다음과 같이 간주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설립된 혜택연도 내에 혜택주간을 위해, 원고는 다음 상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실업 상태이다:

- (1) **완전 실업 상태.** - 이 조항의 상세 조항(c)의 지급을 포함한 원고의 주간 수입은, G.S. 96-14.2 에서 계산된 원고의 주간 혜택 액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 (2) **부분 실업 상태.**
 원고는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고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된다:
 - a.
 원고는 원고가 혜택연도 설립 요청을 한 급여 주 동안 일이 부족했던 이유로 해당 개인이 정규직으로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 공장, 또는 산업에서 개인은 통상적으로 예정된 풀타임 3 일과 동일한 양보다 적게 일하였다.
 - b.
 원고가 혜택을 요청하고 있는 급여명세서 주간의 원고 수입은, 이 섹션의 상세 조항(c)의 지급을 포함하여, G.S. 96-14.2 에서 계산된 것과 같이 원고에게 주간 혜택 금액이 감소한 자격을 준다.
- (3) **부분 완전 실업 상태.** -
 원고는 주간 전체 또는 부분에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잠시 일하는 직업 또는 부업의 수입이 G.S. 96.14-2 에서 계산된 것과 같이 원고에게 주간 혜택 금액이 감소한 자격을 준다.

N.C. Gen.Stat. §96-15.01(b).

법의결론:

현재의 경우, 청문회에서 제시된 적합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는 사실의 발견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증거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래서명자는 적합하고 믿을 만한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가 했다고 결론 내립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항소심판의 결정은(확인되어야/ 뒤바뀌어야/수정되어야)합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실업급여 혜택 수혜에 대해(자격이 있습니다)(자격이 없습니다).

결정:

항소심판의 결정은(확인되었습니다)(뒤바뀌었습니다)(수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로 끝나는 주(들)의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로 끝나는 주(들)의 실업보험 혜택을 받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평가위원회의의원 Fred F. Steen, II 및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여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

이.

평가 위원회

위원장

주의: 이 고위 당국 결정은 법원의 재심을 위한 청원이 아래에 설명된 것처럼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우편 발송 후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우편 발송 날짜는 이 결정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고위 당국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안내는 동봉된 팸플릿을 참조하십시오. 해당 팸플릿은 주 전역의 공공 고용 사무소 및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www.des.nc.gov 를 통해 고용 안전부 웹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방문하여 귀하가 선택한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심사를 위한 항소 권리

이 고위 당국 결정에 대한 항소는 청원자로부터 그 또는 그녀가 거주하는, 또는 청원자의 주된 사업 장소가 있는 카운티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스 캐롤라이나 주 어느 카운티에도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면, 항소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의 또는 논쟁이 일어난 노스캐롤라이나 카운티의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은 N.C. Gen. Stat. §§ 96-15(h) 및 (i)에 의거하여, 법원의 검토를 위한 청원서가 적시에 고등 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한, 삼십 (30)일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중요 -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고등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된 사법 심사 청원서 사본은 청원 접수 후 십 (10)일 이내에 고용 안전부 ("Division") 및 소송에 기록된 모든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 사본은 개인적 서비스 또는 공인 우편으로 송달 받아야 하며, 수령 확인이 요청됩니다. 고등 법원 검토를 위한 청원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업무 처리를 위해 등록된 요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A. John Hoomani
 Chief Counsel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
우편 주소: Post Office Box 25903, Raleigh, NC 27611-5903
실제 주소: 700 Wade Avenue, Raleigh, NC 27605-1154

주의: 귀하가 다른 당사자의 사법 심사 청원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 심사 절차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1) 귀하가 심사 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청원서를 받은 후 십 (10)일 이내에 고등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또는 (2) N.C. Gen. Stat. § 1A-1, Rule 24 에서 제공된 것과 같이 개입하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

04 N.C. Admin. Code 24A .0105(32) (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 자의 개인 포함)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C. Gen. Stat. Ch. 84 및 § 96-17(b).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 또는 증명은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C. Gen. Stat. Ch.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04 N.C. Admin. Code 24C .0504 에 의거하여,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

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 N.C. Gen. Stat. § 96-18(g)(2).

원고에 대한 특별 통지: 귀하가 근본 클레임에 관련하여 실업 보험 급여를 수령하고 있거나 이전에 받았고, 이 고위 당국 결정이 그러한 혜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귀하를 부적격 또는 실격으로 규정하는 경우, 귀하는 N.C. Gen. Stat. § 96-18(g)(2)에 의거하여 혜택을 초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고위 당국 결정에 의해 초과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귀하는 해당 부서의 혜택 무결성 / 혜택 지불 통제 섹션으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를 별도의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초과 지불 통지 또는 초과 지급 결정 통지서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귀하의 초과 지급 액수와 적용되는 처벌을 명시 합니다. 귀하가 초과 지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고 노스 캐롤라이나 법에 따라, 이 고위 당국 결정의 사법 검토 청원을 제기하는 것뿐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청원서에서, 귀하는 항소가 (1) 실격 또는 자격의 문제 및 / 또는 (2) 귀하가 초과 지급을 받았음에 대한 최종 결정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

결정 전달:

